

< 조례정비특별위원회 >

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(안)

목 적

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그 동안 기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등 불합리한 조례를 발취하여 시민생활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·개정함으로써 진정한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고 사회전반의 개혁의지에 동참함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.

□ 활동방침

- 상위법령 정비에 의한 사문화된 조례 폐지
-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볼 때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 폐지
- 동일 사안에 대해 별개로 되어 있는 2건 이상의 조례 등을 통폐합
- 지역현실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 등의 개정
- 시민편의 위주의 조례개정 및 제정
- 자치법규의 위계체계 정비(법규의 상호관계)
 - 법령의 범위
 - 자치단체 사무범위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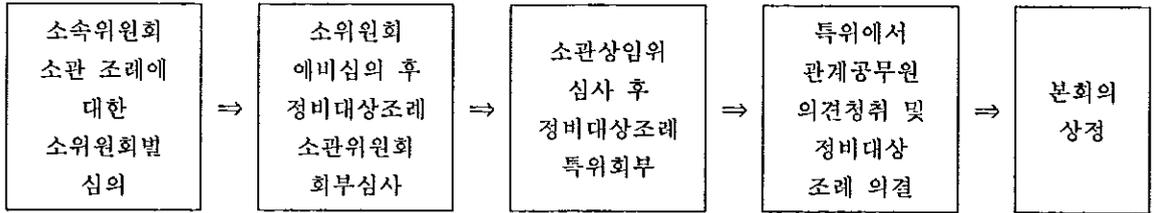
□ 활동개요

- 특별위원회 구성
 - 명칭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(제67회 부천시의회(정기회) 본회의 의결)
 - 위원장 : 한병환 의원
 - 간사 : 이강인 의원
 - 위원 : 9명(강진석, 김대식, 김삼중, 류중혁, 박종신, 이강인, 한기천, 한병환, 홍인석 의원)
- 소위원회 구성(3개 소위원회)

구 분	위 원	비 고
기 획 재 정 위 원 회	강진석, 이강인, 홍인석 의원	
행 정 복 지 위 원 회	박종신, 한기천, 한병환 의원	
건 설 교 통 위 원 회	김대식, 김삼중, 류중혁 의원	

○ 활동기간 : 99. 1. 4~99. 6. 30(6개월 간)

○ 활동흐름도



○ 심의대상 조례 : 191건(98. 12. 20일 현재 발효중인 조례)

-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: 51건(의회사무국 9건 포함)
-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: 79건
-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: 61건

○ 정비조례 유형

구 분	제정조례	개정조례	폐지조례	수정조례	통합조례	비고
내용검토	현행 없는 조례를 새로 제정	①일부개정 ②전부개정	• 목적달성이나 실효성 없는 조례 •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	• 자구변경 • 문안추가 • 제명변경 • 조항분할	유사조례 통폐합, 효율성 증진	

□ 중점정비 착안사항

구 분	세 부 착 안 사 항	비 고
제정범위 및 법규관계	○ 자치사무(고유, 단체위임)범위밖의 사항 포함 여부 ○ 상위법규 조례와 저촉되는가 여부 ○ 법률이 개정되어 사문화되었으나 방치한 조례 ○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이탈한 조례	
필요성과 타당성 검토	○ 제정·개정·폐지의 필요성, 시기 등 검토 ○ 시민에 미치는 기대효과 ○ 현 조례가 과대·과소하지 않고 적절한가 등	
재정 등 부담고려	○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가 검토 ○ 평등의 원칙에 맞는지 여부 ○ 새로운 재정부담이나 재정을 고려치 않는 조례 여부	
시행에 따른 마찰	○ 시행될 경우 마찰이나 문제점 검토 ○ 정비될 경우 주민의 민원유발 여부	
규정의 적정성	○ 조례내용이 어렵고 이해하기 곤란한 것은 없는지 ○ 위임사항이 광범위하여 단체장의 재량행위 남용이 없는지 여부 ○ 조례에 규정할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여부 ○ 1개의 조례를 2-3개로 분할 제정한 조례 여부	

□ 일정별 활동계획

기간	항목	내용	주관	비고
99. 1. 4~ 99. 2. 28	○ 부천시전체 조례에 대한 기초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위원회 위원별 소관조례에 대한 조사·연구 및 심의 •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회의시 소위원회별 월간심의 실적 보고 • 정비대상조례 선정 	소위원회 위원 소위원회 반장 소위원회별	• 매주금요일 소위원회 및 전체 회의 개최
99. 3. 1~ 99. 3. 31	○ 정비대상조례에 대한 정리작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관상임위 심사 회부 • 특위회부 대상조례 선정 	소위원회별	
99. 4. 1~ 99. 5. 31	○ 최종마무리작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위원회에서 심의 회부된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특위 심의 → 관계공무원 의견청취 • 시민여론수렴 및 필요시 공청회 개최 • 정비대상조례 최종 확정 	조례정비 특별위원회	"
99. 6. 1~ 99. 6. 30	○ 본회의 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본회의 의결 	"	"

※ 일정은 위원회별로 다소 유동적임.

□ 세부추진계획

○ 정기회의 개최

- 일시 : 매월 첫째주, 셋째주 금요일 10:00~
- 장소 : 특별위원회
- 내용 - 각종 조례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토론
- 시민여론수렴 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및 방향설정
- 소위원회별 활동결과 심의(필요시 관계공무원 의견청취)

○ 수시 회의개최

- 일시 : 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시 개최
- 장소 : 특별위원회
- 내용 - 정기회의 결과에 따른 심층분석
- 여론청취, 상위법령대비 및 비교분석 등

○ 시민의견수렴(필요시 공청회)

- 방법 : 수시(의정활동중)
- 대상 : 지역직능단체 및 일반시민, 지역주민(동사무소) 등
- 내용 : 조례정비와 관련한 시민의견 청취반영

○ 조례정비 실시 홍보

- 기간 : 99. 1. 4~99. 3. 31(3개월 간)
- 방법 : 시보, 유선방송, 반상회보, 동회보 활용

□ 기타사항

- 본 계획을 부천시의회 본회의 승인 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.
- 각 소위원회에서는 자체 심의계획을 수립하고, 자체심의 계획서를 99. 1. 20일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- 또한, 각 소위원회에서는 심의실적을 매월 1회 이상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.(소위원회 활동기간 동안)